



서 홍 원

환경부 대기관리과
환경사무관

대기오염관리제도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State about management system Air pollution and of reciprocal promotion direction

대기오염 관리의 목적은 산업·경제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방지시설 설치 및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규제·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기오염관리제도의 기본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 법에서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중금속 등 25종의 오염물질과 악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여 사업장(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생활악취시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 오염물질의 배출비중이 비교적 큰 시설로 가스상·입자상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으며 허가·신고의 대상이 된다.

반면, 생활악취시설의 경우는 악취에 대한 배출규제만을 적용받으며, 비산먼지발생사업장도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설치의 규제만을 적용받는 시설임의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latile

Organic Compounds)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기환경정책은 황산화물, 먼지 등의 1차적이며 직접적인 대기오염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어 왔으며, 저황유(低黃油) 공급, 고효율 집진시설 설치유도 등의 정책추진으로 이 분야의 대기환경문제는 많은 개선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인구증가와 대도시의 발달, 차량의 증가 등으로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및 이들의 광화학적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오존과 같은 2차 오염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공단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악취오염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야의 개선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 및 용자 지원,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선 등의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99년의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1999년4월 개정되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10월에 개정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제도개선 등 주요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간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민원 발생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들을 대폭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소형소각로(시간당 소각능력이 25kg~100kg의 소각시설)를 신규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시켰으며, 25kg 미만의 소각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가항시설 등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신규 규제하고 있으며, 하수·폐수종말처리시설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규제대상 이외의 출판업,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등 제조업의 시설을 생활악취시설에 포함시키고 악취배출시 최고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분을 강화·생활악취시설에 대해서는 그간 악취기준 초과시 조치(개선)를 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제도개정에 따라 악취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조치명령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조치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최고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처분을 강화하였다.

또한, 악취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현행의 2~5배 수준으로 대폭 강화(예 : 암모니아 : 2~5 → 1~2ppm, 황화수소 0.06~0.2 → 0.02~0.06ppm 등)하여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도록 유도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 오고 있다.

이러한 대책과 함께 울산·온산·여천 특별대

책지역 및 수도권대기환경규제지역(서울·인천 및 경기도 15개시)을 중심으로 악취 및 광화학 스모그를 유발하는 벤젠, 아세트알데히드, 휘발유 등 31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주유소·저유소, 제조업 분야의 도장·세정시설, 유류·유기용제 저장시설 등에 대한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확대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규제도 함께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악취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대상의 확대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0년도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범위를 확대하여 톨루엔(Toluene), 자일렌(크실렌, Xylene) 등을 추가로 규제대상물질에 포함시키고, 악취물질에 대한 규제대상 확대 및 배출허용기준 개선을 위한 용역사업도 추진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절기 오존(광화학스모그) 및 악취 발생에 대비한 배출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업장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의 해소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대기환경의 개선은 정부의 정책 추진만으로는 도달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과 적정한 운영, 주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책추진에 대한 산업체와 국민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 ☐